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29.

발의자 : 소병훈 · 한정애 · 김해영
유동수 · 강창일 · 유은혜
오영훈 · 김영호 · 박경미
임종성 · 김철민 · 정성호
윤후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러나, 「민법」 제930조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법은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며,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, 현행법 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

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「민법」의 후견인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사람”을 각각 “사람 또는 법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에 따라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 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 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<u>사</u> <u>람</u>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<u>사람</u>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9조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<u>또는 법인</u>----- ----- <u>사람 또는 법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